

**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**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의  
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 
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 
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 
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 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 
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**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 
삼성KODEX에너지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  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  
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0.05.01 - 2011.04.30  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  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 
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 
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 
케이비투자증권, 하이투자증권

**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**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0.07.07	제2조 (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) 제48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	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.
	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정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4. 명세 및 상각을 그 밖의 총회의 결의내용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, 이를 변경하거나,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정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을 그 밖의 총회의 결의내용 4.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, 이를 변경하거나,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		는 경우는 제외한다.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·양수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.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9.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8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.	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·양수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.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9.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10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2010.11.01	제38조(투자신탁보수)	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1.~ 3.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)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곱한 금액을 말하며, 이하 계산기간 중의 일수로	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1.~ 3.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)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곱한 금액을 말하며, 이하 계산기간 중의 일수로

	<p>나는 금액을 말한다(이하 같다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운용보수율: 연 1,000분의 3.3</p> <p>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0</p> <p>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</p> <p>⑤ 생략</p>	<p>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운용보수율: 연 1,000분의 3.4</p> <p>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5</p> <p>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</p> <p>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4</p> <p>⑤ 생략</p>
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일</p> <p>2. ~ 4. 생략</p> <p>② ~ ③ 생략</p> <p>④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 이익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1. 법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할 때 계산되는 이익</p> <p>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</p> <p>2. ~ 4. 생략</p> <p>② ~ ③ 생략</p> <p>④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 이익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</p> <p>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

**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**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**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**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*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**

- 해당사항없음

**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**

- 해당사항없음

**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**

- 해당사항없음

**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**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1,650,000원	서면계약	-	-	-	-	-